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

# 2026-제4호 입법정책 동향

---

2026. 4.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

**발행부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280-4415)

**편집·검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지원팀(☎ 280-4414)

**인 쇄:** 2026년 4월 일

**발 행:** 2026년 4월 일

---

# 목 차

## I. 타 시도 입법 동향

- ① 2025년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사례 ..... 5
- ②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16

## II.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 ① [일부개정] 전북특별법, 강원특별법 (2026.10.22. 시행) ..... 22
- ②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2026.3.12. 시행) ..... 23
- ③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2026.6.18. 시행) ..... 26

## III. 입법 · 정책 현안

-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화 방안 ..... 29

## IV. 해외 법제 동향

- ① 세계 각국의 퇴직급여 제도 ..... 34
- ② 프랑스의 주택공급 촉진 입법례 ..... 38

## V.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① 조례에 금고지정결과 등의 공개 방법으로 구보(區報)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등 여부 ..... 43
- ② 조례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내용 규정 가능 여부 ... 47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전 심의 안건의 사전 공고 의무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 ..... 49

## VI.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 ① 자치경찰단 예산의 자치경찰위원회 심의 · 의결 필요 여부 ..... 52
- ② 학원설립 · 운영자 등이 광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의 의미 ..... 58
- ③ 재정위원장 호선 시 일반직 위원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 61

# I . 타 시도 입법 동향

# I. 타 시도 입법 동향

## 1 2025년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사례 [법제처 선정 '25.12.18. 발표]

### □ 선정결과

| 구 분              |               | 기관명   | 조례명 및 주요 내용   |
|------------------|---------------|---|---|
| 광역<br>부문<br>(2점) | 최우수상<br>(1)   | 경기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li> <li>-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기후복지 실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
|                  | 우수상<br>(1)    | 부산광역시<br>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li> <li>-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사업 종결 시, 종결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
| 기초<br>부문<br>(7점) | 최우수상<br>(1)   | 서울특별시<br>금천구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li> <li>-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저소득층 남녀청소년 모두에 대한 건강·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
|                  | 우수상<br>(2)    | 경상북도<br>문경시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li> <li>-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해당 서비스 유지·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
|                  |               | 전라남도<br>해남군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 편의서비스 지원 조례」</li> <li>- 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농촌 지역의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해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
|                  | 장려상<br>(4)    | 충청북도<br>충주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li> <li>-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에도 인터넷 발급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편익을 증진</li> </ul>                      |
| 전라남도<br>화순군의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li> <li>- 장례식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   |
| 전라남도<br>보성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성군 소통문자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li> <li>-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 및 군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소통문자 서비스 등의 실시를 위한 사항을 규정</li> </ul> |   |
|                  | 충청남도<br>당진시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li> <li>-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염해농지에 한정하여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추진</li> </ul>               |   |

## □ 주요내용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25.7.18.제정)

- (제정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및 도민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한 사항 규정
- 기후격차, 기후격차 취약계층, 기후건강 피해, 기후복지 등 용어 정의
- 기후격차 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규정
-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지원 규정
- 저소득층 등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한 에너지, 건강, 주거, 교통 등 지원 규정
- 농촌·어촌·산촌 지역 등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와 농어민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기후복지 실현에 관한 사항 규정
- 도민의 기후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원 규정

※ (전북 유사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25.8.8.제정)

###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25.10.1.제정)

- (제정이유) 재정사업의 폐지 전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종결 시 대안을 마련하여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함
-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의무 규정
-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함
-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의 종결 시 시민에 대한 대안 마련 노력 의무 규정
- 종결 재정사업의 현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

※ (전북 유사조례) “없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 및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도민의 기후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 노동자, 저소득층·노인·어린이·장애인, 농어민 등을 말한다.
3. “기후격차 취약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5. “기후건강 피해”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폭우·태풍·가뭄 등의 기상현상, 감염병, 대기·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6. “기후복지”란 모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빈부, 세대, 성별 등에 관계없이 기후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 교통, 건강, 주택 등의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7. “기후교육”이란 도민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8. “기후테크”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과 이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정 전반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빈부·세대·성별 간 피해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후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도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후격차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현황 및 전망
  2.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 및 전략
  3.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이행대책
  4.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실태
  5.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조사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제2장 기후격차 취약기업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제6조(기후격차 취약기업 탄소규제 대응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기후격차 취약기업(이하 “취약기업”이라 한다)이 알이백(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에스지(ESG) 공시 등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약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 및 컨설팅
2. 취약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취약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확충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
4. 취약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컨설팅
5. 취약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수출 규제 컨설팅, 환경 관련 인증 지원
6. 대기업과 취약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

7. 그 밖에 취약기업의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증 또는 융자 등의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취약기업의 기후테크 보급 및 적용 지원 등)** 도지사는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테크 보급 및 적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지원)**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고탄소 산업(업종) 분야의 고용상태 실태조사
2.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 등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 예방 및 생계 유지, 재취업 촉진 지원 대책
3.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녹색일자리 창출 지원)**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일자리(이하 “녹색일자리”라 한다)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건축·교통·농축수산 활성화, 산림자원 확충, 순환경제 활성화, 기후테크 육성 등 분야별 고용창출 효과 분석
  2. 공공·민간 분야 녹색일자리 발굴 및 육성 대책
  3. 녹색일자리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홍보 대책
  4. 녹색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녹색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장 저소득층 등 기후복지 실현 지원**

**제11조(기후에너지복지)** ① 도지사는 기후격차로 인해 에너지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기후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 지원
2.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 설비 지원
3.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취약계층의 기후에너지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방식 등은 「경기도 에너지복지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기후건강복지)** ① 도지사는 기후격차로 인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기후건강 피해의 예방·회복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후건강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보험 지원
2.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지원
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4.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지원
5. 그 밖에 취약계층의 기후건강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후건강복지의 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에 따라 지원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기후주거복지)**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기후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후주거복지를 위해 노후 공공주택 대상으로 연차별 에너지 효율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과 취약계층 노후주택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2.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3. 신·재생에너지 확충 지원

4. 그 밖에 주거환경이 취약한 계층의 기후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기후교통복지)** ① 도지사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과 대중교통 비용 지원 등 교통 분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취약계층의 기후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후교통복지를 위해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에 따라 지원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장 농촌 등 기후복지 실현

**제15조(농촌 지원)** 도지사는 농촌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 및 농업인의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등의 생육 저하, 병해충, 재해, 주산지 변화, 작물

모니터링 및 수확량 예측 체계 구축

2. 기후변화 대비 농작물의 육성
3. 영농형 태양광 보급 및 활성화
4.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영농 기술 개발
5. 간척지, 저수지, 농업 부문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충
6. 저메탄 사료 개발 및 보급 지원
7. 축사 지붕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충 지원
8. 저탄소 축산물 인증 취득 지원
9. 농업인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어촌 지원)** 도지사는 어촌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 및 어업인의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 자원 변화 모니터링 및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 <개정 2026.1.7.>
2. 어항 등 수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충
3. 해조 숲 조성 등 블루카본(Blue Carbon) 조성
4. 어민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산촌 지원)** 도지사는 산촌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 및 임업인의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산림 조성 및 경영
2.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생산기반시설 확충
3.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砂防)
4. 산림병해충 방제
5. 탄소제로숲 생산 임산물 인증
6. 임업인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
7. 내화(耐火) 수종의 보급 확대 [신설 2026.1.7.]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장 기후교육 활성화

**제18조(기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기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후·환경·생태 분야 교육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어린이집 등의 기후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기후교육 인프라의 구축)** ① 도지사는 연령대별·수준별 맞춤형 기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내외 체험형 교육시설을 구축·운영하거나 이를 위탁 받은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식물원, 자연생태 시설, 환경시설 등을 활용하여 체험형 기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기후교육 프로그램 등의 확충)** ① 도지사는 기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온라인 기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 기후행동 실천방법 등의 교육을 도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21조(기후교육 활성화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기후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군, 경기도교육청, 환경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후교육 참여를 활성화 해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경우 종결 절차의 투명성 및 타당성 확보와 종결된 재정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사업 관리의 책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사업”이란 부산광역시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 및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종결”이란 재정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재정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사업의 종결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 마련)** 시장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투명성 및 타당성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현황 제출)**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해마다 편성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황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비보조사업 등 재정사업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사업
2. 시설비 등 투자사업비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된 재정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의 종결 근거 또는 사유
2. 전년도 대비 종결된 재정사업 건수 및 예산의 증감 현황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을 종결한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표 달성 또는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의 완료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종결
  3. 유사한 다른 사업이 있는 경우
  4. 시민 참여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의 종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재정사업의 종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6. 4. 10.] [폐지] 2026. 4. 10. 조례 제3015호

### □ 관련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 폐지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소멸되고,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함

### □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 입법 시사점

- ▲ 경찰법 전부개정이 시행 ('21.1.1.)됨에 따라 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어졌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 이에 따라, 기존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되던 대통령령 (「치안행정협의회규정」)이 폐지되었음 (2020.12.31., 타법폐지)
- ▲ 전북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10.1.제정)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의 주요 기능인 '법질서 확립, 도민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협의 사항은 현행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 명시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의 범위에 대부분 포함된다고 사료됨

-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관련 사무의 협력·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 자체 정책 자문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는 바, 종전의 '치안행정협의회'는 법적·실무적으로 모두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 볼 수 있음
- ▲ 이에, 기존 협의회에서 다루던 치안 관련 의제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유사·중복 기구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북 또한 해당 조례의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참고) 관련 규정 비교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지역 범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치안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① 전북지역 범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실무 및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다문화 가정·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제4조(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범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등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범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도내 기관·단체의 장
2. 범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① 위원장은 도지사로서 하며 부위원장은 기타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상호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9조(간사)** 간사는 전북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협의)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전북지방경찰청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전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2조(분과협의회)** 분과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3조(치안협력 사업)** ① 도지사는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범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는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Ⅱ.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 Ⅱ.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일부개정] **전북특별법** [2026. 4. 21., 일부개정 / 2026. 10. 22. 시행]

1

[일부개정] **강원특별법** [2026. 4. 21., 일부개정 / 2026. 10. 22. 시행]

### □ 개정이유

- (전북특별법)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생명·전환산업·연구개발·인구·정주여건·보건의료 등 분야별 권한 이양 및 특례 확대
- (강원특별법) 전략산업·연구개발·신재생에너지·수소·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분야와 교육·출입국·경석·항만 등 분야별 권한 이양 및 특례 확대

### □ 주요내용

| 구 분             | 주요내용  |
|-----------------|---|
| 전북특별법<br>(2차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위원회 구성에 <u>도교육감 포함 및 위원 정수 확대</u>, 도지사 및 <u>도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건제출권 부여</u></li> <li>• 농생명산업지구 절차 및 협의 대상 정비</li> <li>• <u>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 위탁대상 확대 및 인력 양성기관 설치·지정근거 마련</u></li> <li>• 의료기기산업 관련 일부 권한 도지사 이양</li> <li>• 응급의료 취약지 <u>지방의료원 운영비 우선 지원</u> 및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u>기부금품 모집 특례</u></li> <li>• <u>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국가의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지원 근거 마련</u></li> <li>• <u>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전북전략 연구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 마련</u></li> <li>• 청년 농업인·평생교육, 농지이용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 <u>정주여건 관련 특례 등 정비</u></li> </ul> |
| 강원특별법<br>(3차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도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증원 국가의 노력 규정</li> <li>• <u>강원전략연구사업 지정 관련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신·재생 에너지·수소·핵심광물 산업 등에 대한 도지사의 시책과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u></li> <li>• <u>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및 공동급식센터 운영 특례,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운영 및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등</u></li> <li>• <u>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산업자원 활용과 민관 협력 규정 마련, 시험양식업·도시교통·건설·관광·문화예술 등 지역경제·생활 관련 분야 각종 특례</u></li> </ul>  |

## 2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일부개정]

### □ 개정이유

-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원 재판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결정에 반하는 취지 등 조건)
- ② 청구기간의 특칙 및 청구서 첨부서류 요건 신설
  - ⇒ 재판소원 시 별도의 청구기간 규정을 두어,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규정함
  - ⇒ 해당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확정증명원 첨부토록 규정, 확정 여부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신속히 심사하도록 함
- ③ 가처분 제도 도입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 공권력 효력 정지 가능)
- ④ 인용결정의 효력 - 재판 취소 및 환송
  - ⇒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재판을 직접 취소하며,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함

| 현 행   | 개 정  |
|---|--|
| <p>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p>  | <p>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p>   |
| <p>② (생략)</p> <p>&lt;신설&gt;</p>   | <p>② (헌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li> <li>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li> <li>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li> </ol> |
| <p>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 <p>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p> <p>② (헌행과 같음)</p>   |
| <p>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 ③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 <p>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 ③ (헌행과 같음)</p> <p>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p>  |
| <p>제72조(사전심사) ①·② (생략)</p> <p>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li> </ol> | <p>제72조(사전심사) ①·② (헌행과 같음)</p> <p>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li> </ol>  |

| 현행   | 개정  |
|--|---|
| <p>2.3. (생략)</p> <p>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p> <p>&lt;신설&gt;</p> <p>④ ~ ⑥ (생략)</p>  | <p>2.3. (헌행과 같음)</p> <p>4.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p> <p>5.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p> <p>④ ~ ⑥ (헌행과 같음)</p>   |
| <p>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생략)</p> <p>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p>   | <p>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헌행과 같음)</p> <p>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1. (헌행과 같음)</p> <p>2. 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해당 재판의 당사자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p>  |
| <p>제75조(인용결정) ① ~ ③ (생략)</p> <p>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p> <p>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p> <p>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p> <p>&lt;신설&gt;</p> | <p>제75조(인용결정) ① ~ ③ (헌행과 같음)</p> <p>④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p> <p>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p> <p>⑦ 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p> <p>⑧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⑨ 제8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p> |

3 [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6. 18.] [법률 제21486호, 2026. 3. 17., 제정]

□ 개정이유

-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
-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 및 관리·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전략 투자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
- 전략적투자의 투명성·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전략적투자"의 개념과 분류, 투자의 기본원칙인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하여 각각 정의함 (제2조)
- 나. 정부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함 (제3조제3항)

- 다.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에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사항을 검토한 후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투자 추진 의사를 정하는 중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등 전략적투자의 체계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 라.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해당 공사의 자본금 규모를 2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는 등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6조부터 제39조까지)
- 마.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공사 출연금, 정부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협력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하도록 함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 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함 (제51조)
- 사.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제54조)

## □ 입법 시사점

### ▲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통상·산업 전략에 대응해 관세, 투자, 조선, 안보협력을 하나의 제도적 패키지로 연결한 첫 사례 의의

- ⇒ (단기적) 관세 및 수출환경 변화 대응 필요
- ⇒ (중장기적) 대미 투자 및 현지 사업 재편, 공급망 재구축 등 검토 필요
- ⇒ 상업적 합리성, 정책 일관성, 외환 안정, 산업 환류 효과의 균형 있는 구현 필요

### **Ⅲ. 입법 · 정책 현안**

### Ⅲ. 입법·정책 현안

####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화 방안

※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2026.3.4.) / 류영아

- ▲ 지방세 체납 증가로 지방재정 압박 심화
- ▲ 현재 지방세 체납 징수 방식은 인력 중심의 수작업, 사후적·획일적 대응, 체납자 선별 기술 부족 등의 한계
- ▲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지방세 행정 도입 필요성 증대, 일부 지방자치단체 활용 중
- ▲ 인공지능(AI) 기반 체납 예측 및 자동 분류체계 마련, 빅데이터 활용 사전적·개별적 대응 체계 구축, 체납자 맞춤형 관리 전략 필요

#### ① 지능형 조세 행정 도입 필요성 (지방세 체납 징수)

- 지자체 재정자립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자체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에 대한 체납 관리 → 지자체의 안정적 운영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 지방세 체납액: ('20.) 3조 3,263억 원 → ('24.) 4조 4,133억 원, 32.7% 증가
  - \* 미회수 잔액: ('20.) 3조 676억 원 → ('24.) 3조 1,586억 원, '24년 기준 체납 징수율 약 28%에 불과
- 현 지방세 체납 징수 방식, 인력 중심의 수작업 징수, 사후적·획일적 대응, 체납자 선별 기술 부족 등 여러 한계 노출
-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유형이 갈수록 복잡, 기존 인력 중심·사후 대응 방식으로는 고질적·악성 체납자 선별 관리 어려움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활용 통한 체납자 특성과 행태 사전 파악, 체납 유형별 차별화된 징수 전략 수립 / 적용 필요

## 2 지방세 체납 현황

[참고1] < 2024년 지방세 체납 현황 (11개 세목) > (단위: 억 원, 건)

| 세 목        | 지방세 부과액          | 지방세 징수액          | 지방세 체납액       | 지방세 체납건수          |
|------------|------------------|------------------|---------------|-------------------|
| 취득세        | 262,757          | 259,561          | 4,574         | 67,928            |
| 등록면허세      | 21,793           | 21,693           | 263           | 669,007           |
| 담배소비세      | 35,048           | 35,025           | 593           | 24,805            |
| 주민세        | 28,471           | 27,950           | 1,627         | 4,932,978         |
| 지방소득세      | 206,628          | 199,511          | 16,907        | 1,412,836         |
| 재산세        | 155,508          | 151,077          | 8,399         | 4,453,823         |
| 자동차세       | 79,212           | 74,671           | 7,050         | 6,799,739         |
| 레저세        | 8,730            | 8,730            | -             | -                 |
| 지방소비세      | 258,539          | 258,539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19,771           | 19,288           | 976           | 1,878,535         |
| 지방교육세      | 74,451           | 72,260           | 3,715         | 15,027,963        |
| 과년도 수입     | 41,799           | 12,547           | -             | -                 |
| <b>합 계</b> | <b>1,192,708</b> | <b>1,140,853</b> | <b>44,133</b> | <b>35,371,667</b> |

[참고2] < 2024년 지방세 체납 현황 (17개 광역자치단체) > (단위: 억 원, 건, 명)

| 구 분        | 부과액              | 징수액              | 체납액           | 체납 징수액        | 체납건수              | 지방<br>세무직공무원  |
|------------|------------------|------------------|---------------|---------------|-------------------|---------------|
| 서울         | 285,294          | 273,669          | 10,287        | 2,603         | 5,012,750         | 2,177         |
| 부산         | 69,644           | 66,810           | 2,367         | 616           | 2,194,426         | 811           |
| 대구         | 45,809           | 43,996           | 1,015         | 461           | 1,417,175         | 515           |
| 인천         | 61,687           | 58,915           | 2,248         | 736           | 2,075,949         | 520           |
| 광주         | 25,819           | 24,817           | 748           | 258           | 645,618           | 242           |
| 대전         | 26,118           | 24,817           | 977           | 279           | 803,433           | 298           |
| 울산         | 25,504           | 24,527           | 802           | 208           | 602,119           | 208           |
| 세종         | 8,927            | 8,500            | 410           | 71            | 216,782           | 75            |
| 경기         | 298,799          | 282,848          | 14,044        | 3,815         | 9,700,095         | 2,215         |
| 강원         | 33,151           | 31,938           | 1,048         | 362           | 1,147,670         | 782           |
| 충북         | 35,222           | 33,908           | 1,138         | 332           | 1,094,321         | 387           |
| 충남         | 53,864           | 51,812           | 1,734         | 548           | 1,660,296         | 552           |
| <b>전북</b>  | <b>34,849</b>    | <b>33,449</b>    | <b>1,180</b>  | <b>362</b>    | <b>1,369,199</b>  | <b>452</b>    |
| 전남         | 42,069           | 40,782           | 1,031         | 364           | 1,257,405         | 515           |
| 경북         | 56,398           | 54,244           | 1,758         | 548           | 3,150,549         | 848           |
| 경남         | 69,910           | 67,042           | 2,424         | 721           | 2,511,263         | 774           |
| 제주         | 19,646           | 18,627           | 920           | 263           | 512,617           | 86            |
| <b>합 계</b> | <b>1,192,710</b> | <b>1,140,853</b> | <b>44,133</b> | <b>12,547</b> | <b>35,371,667</b> | <b>11,157</b> |

### ③ 지방세 체납 징수 방식 / 한계

<인력에 과도한 의존,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된다는 한계>

- ① 지방세 체납 건수가 많아질수록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증가, 체납자의 개별 사정 파악 및 정밀 조사 수행 한계
- ② 담당 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체납 건수가 많고, 방대한 체납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통합·분석해주는 시스템이 충분치 못함
- ③ 대규모 지자체: 인력 중심 대응만으로는 증가하는 체납 데이터 및 고도화된 체납 수법에 효과적 대응 어려움
- ④ 소규모 지자체: 순환보직과 제한된 인력·예산으로 체납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기 어렵고, 전문성 축적에도 한계
- ⑤ 체납 발생 후 납부지역가산세 부과, 부동산 등 압류와 공매, 인허가 제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사후조치 중심
- ⑥ 다수 지자체에서 획일적 독촉 중심의 체납관리
  - \* 체납자의 지급 능력이나 성향 미구분,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과 압류 예고 획일적 반복
- ⑦ 체납액 규모나 체납 횟수 등 단편적 기준에 의존하는 경향
- ⑧ 체납자 선별 기술 부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 발생
  - (생계형 체납자에게) 반복 독촉과 형식적 압류 등 **실효성 낮은 행정력** 과도 투입
  - (고액·상습·악성 체납자에게) 관련 행태 대응 지연 및 적시 포착 한계

### ④ 지방세 체납 징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 (경기도) 'AI 기반 체납분석 서비스': 행안부와 협력 개발한 시범 운영 시스템, 과거 5년 간 9,500만 건의 체납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체납자의 6개월 이내 납부 가능성 수치 제공

- (서울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상 가족 명의 은닉재산·재산 빼돌림 행위를 빅데이터로 추적,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입주권 압류 및 사망자 상속인 불명으로 방치된 부동산 상속 관계 분석
-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체납자의 10년 간 스마트폰 번호 빅데이터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정보와 대조 → 5,000명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정 적발·압류 및 1,600여 명으로부터 자진 납부 및 강제징수 통해 약 50억 원 체납액 징수 성과

## 5 지능형 조세 행정 도입 방안

### ① 인공지능(AI) 기반 체납 예측과 체납자 자동 분류체계 도입

- ⇒ 지방세 체납 및 납부 이력, 소득·재산 정보 등을 AI 모델 학습에 활용해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 점수와 체납 유형 자동 분류
- ⇒ 집중 관리 대상 선별 방식 활용, 한정된 인력으로 징수 효율 상승 효과

### ② 빅데이터 활용 사전적·개별적 체납 대응 체계 구축

- ⇒ 지방세 납부자료, 자동차 등록 정보, 복지 수급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합법적 범위 내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 ⇒ 소득 급감, 사업 부진, 지방세 납부 지연 등 위험신호를 실시간 포착하여 체납 발생 전 선제적 대응

### ③ 체납자 맞춤형 관리 전략 수립

- ⇒ AI 기반 체납자 자동 분류 결과를 징수 현장에 적용, 체납자 등급별 차별화된 맞춤형 관리 전략 수립
- ⇒ 체납 규모, 소득·재산 정보, 과거 납부 성실도 등을 종합해 회수 가능성에 따라 체납자를 등급별 세분화, 등급별 최적의 징수 방식을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관리 체계 구축

## **IV. 해외 법제 동향**

## IV. 해외 법제 동향

### 1 세계 각국의 퇴직급여 제도 [법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2. 12.]

#### □ 주요내용 (요약)

-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05.12.1.시행)에 따라 퇴직 근로자 급여 지급을 위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설정 의무화
-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미적용
-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수급권 보장이 필요하며, 사용자에 의한 고용 단절 기간 발생에 따른 편법적 행태 방지를 위해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대두
- 세계 각국의 퇴직급여 및 1년 미만 근로제에 대한 퇴직금 제도 벤치마킹 필요

#### □ 각국 퇴직급여 제도 비교

| 구 분 | 주요내용  |
|-----|---|
| 대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6%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 퇴직급여 전용계좌 이체</li><li>• 근로자는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방식으로 퇴직급여 수령 가능</li><li>• 이직하더라도 퇴직급여 전용계좌에 계속 적립 가능,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li><li>• 1년 미만 근로제 퇴직금 제도는 없으나,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그 근로기간에 비례하도록 계산 및 해고수당 지급 (총 근로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으면 1개월로 계산)</li></ul>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의무화된 법정 퇴직급여 제도가 없고, 임의가입 방식의 기업(퇴직)연금 존재</li><li>• 사내 적립방식과 사외 적립 방식으로 운용</li><li>•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자는 이금 일부를 연금 기금으로 납입하는 '임금전환' 요구할 권리,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li><li>• 급여 수급은 통상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개시 (종신연금, 일시금 또는 혼합 형태)</li><li>• 경영상 해고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퇴직보상금 청구 가능</li><li>* 10인 초과 사업장에서 6개월을 초과해 근속한 근로자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 성격의 보상(연당 월 임금의 0.5배 기준 산정)</li></ul> |

| 구 분   | 주요내용  |
|-------|---|
| 러시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 같은 퇴직급여 제도 미운영, 해고 사유에 따라 '퇴직 수당' 지급</li> <li>• 회사 청산이나 구조조정 등 법 규정 사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미만 또는 이상 등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기준 명시하지 않음</li> </ul> </li> <li>• 최소 1개월분의 평균임금 기준,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3개월분까지 지급</li> <li>• 근로자 자발 퇴사의 경우 퇴직 수당 지급 의무 미발생</li> <li>•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국가연금제도 운영 ('보험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연금계수 충족 시 남녀 각각 65세, 60세부터 수급 가능</li> <li>* 이와 별도로 개인 또는 기업 자발적 가입 가능한 '민간연금기금' 제도 운영</li> </ul> </li> </ul> |
| 말레이시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불임금 성격의 법정 퇴직금 제도 미존재</li> <li>• 하지만,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 근로자의 경우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해고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4천 링깃(한화 약 143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지급 대상 제외</li> </ul> </li> <li>•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수당 대상은 아니나, 근로자 적립기금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요건 충족 시 인출할 수 있음</li> </ul>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연방법,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민간 사업장에 강제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지만, 세제 혜택을 통해 장려 (「국세법」 제401조~제417조)</li> </ul> </li> <li>• 민간 근로자의 72%가 퇴직연금 혜택 ('25.3.기준, 美 노동통계청)</li> <li>• 퇴직연금 가입 자격: 필수재직기간을 1년 이상 요구할 수 없고, 일정기간 재직 근로자에게 연금 수급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주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캘리포니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 중 ('26.~)</li> </ul> </li> </ul> </li> </ul>                             |
| 베트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 수당 수급 권리 (「노동법전」 제46조제1항)</li> <li>• 사용자는 근속 1년당 평균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의무</li> <li>• 근속기간 12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선 퇴직수당 지급 의무 미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실업보험료 납부 기간은 퇴직수당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li> </ul> </li> </ul>  |
| 브라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사회보장 연금 중심 운영 → 사기업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 대해 약 20% 내외 부담금 납부, 근로자는 급여에서 일정 비율 보험료 공제 / 납부</li> <li>•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없으나, 급여·휴가·13월의 월급은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해고 사유에 따라 근속연수 보장기금 인출 및 기금의 40% 추가 보상금 지급 가능</li> </ul>   |
| 싱가포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사회보장제도인 중앙적립기금 중심 운영</li> <li>• 시민권자 또는 거주권자이면서 월 총임금이 750 싱가포르달러 (한화 약 85만원)를 초과하는 55세 이하 근로자에 대해 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가 임금의 17%, 근로자가 20% 매월 부담</li> </ul> </li> <li>• 55세부터 적립금 일부 인출 가능, 잔여 적립금은 65세부터 종신연금 형태 수령</li> <li>• 별도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음. 개별 노사계약에 근거, 2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구조조정 등에 따른 퇴직 위로금을,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정년 퇴직금 지급 가능</li> </ul>  |

| 구 분 | 주요내용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 지급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제도를 명문화한 규정은 없음</li> <li>• 퇴직급여, 3층 구조의 연금제도로 구성 (국민연금·직장연금·개인연금)</li> <li>• 자동가입 통한 직장연금 활성화 및 연금수령 개시 연령 상향(현재 66세에서 점진적 상향)이 특징</li> <li>• 직장연금은 22세~67세 사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대상이며, 최소 8% (고용주 3%, 근로자 5%)를 부담하고 세금혜택을 받음</li> <li>•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화 사례는 없지만, 일정기간 이상 근속자에게 서비스페이 명목의 지급을 인정한 경우는 있음</li> <li>• 2년 미만 근속자(단기근로자 포함)는 고용계약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음</li> </ul>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나,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관할 근로기준감독서에 신고하여야 함</li> <li>• 해당 사업자가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에 퇴직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액 계산 및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li> <li>• 1년 미만 단기근로자에 대한 퇴직규정은 없음</li> </ul>  |
| 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양로금, 기업연금, 직업연금, 개인양로금으로 운영</li> <li>• (대표적인) 기본양로금은 개인의 누적 납부 연한, 납부 급여, 현지 근로자 평균임금, 개인 계좌 금액, 도시 인구의 평균 예상 수명 등에 따라 확정</li> <li>• 개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납부 연한이 누적 15년인 경우, 월 단위로 기본양로금 수령</li> <li>• 근로연수가 6개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간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 0.5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 지급</li> </ul>   |
| 태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속 자체를 기준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급부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고용 종료인 '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법정 급부</li> <li>• 보상금은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에 한해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li> <li>• 근속기간이 120일 이상~1년 미만인 경우 최종 임금 30일분 지급, 이후 근속기간 증가에 따라 지급 일수가 단계적으로 확대</li> <li>•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 최대 400일분의 임금 지급 (제외 대상 있음)</li> </ul>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퇴직 시 최근 12개월 간의 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근 3개월 간의 평균급여에 3개월에 해당하는 기타 상여금 등을 더한 금액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기준급여로 산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li> <li>• 근속기간에 따른 해고 시 퇴직금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기준급여의 4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li> <li>- 11년 이상: 기준급여의 3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li> </ul> </li> <li>• 자발적 퇴사의 경우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며, 근속기간별로 1개월치 기준급여의 2분의 1에서 2개월치 기준급여로 차등지급</li> <li>• 공적퇴직연금 존재, 이 중 민간기업 종사자 대상 일반연금제도는 소득대체율이 최대 50% (연금 전체 수령을 위한 납부기간은 42년)</li> </ul> |

## □ 정부 퇴직연금 제도 개편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 논의 ('26.3.)

〈노사정 공동선언문 ('26.2.)에 따른 합의사항〉

| 현행                     |        | 노사정 합의사항  |       |
|------------------------|--------|---|-------|
| 〈퇴직급여제도〉               |        |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       |
| 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   |       |
| 〈퇴직연금제도〉               |        | [계약형]   | [기금형] |
| DC                     | DB     | DC  | DB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br>(30인 이하) |        | 연합형기금<br>금융기관개방형<br>공공기관개방형기금<br>(중기금 30인 미만 등) |       |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위한 구체적 방안 확정 (~'26.7.) 후 연내 관련 법 개정 추진 및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방안 마련 예정

### 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 ⇒ 공공기관형 '추진 시기' 및 '참여 범위' 등 의견 수렴 / 구체화
- ⇒ 수탁법인 인허가 요건과 기금운용 및 감독체계 검토
- ⇒ 관계부처와 전문가·노사 등 참여 실무작업반 구성, 세부안 마련

### ②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 ⇒ 사외적립 통한 임금체불 예방 및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추진
- ⇒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 제고 병행
- ⇒ 6월까지 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사외적립 의무 이행 등 점검

### ③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 ⇒ 퇴직급여 미적용 1년 미만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등을 위한 퇴직급여와 공제회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 검토
- ⇒ (~6월) 계약기간과 갱신관행 등 '1년 미만 근로현황 실태조사' 실시
- ⇒ (7월~) 경사노위 등 노사정 사회적대화 협의체 통한 대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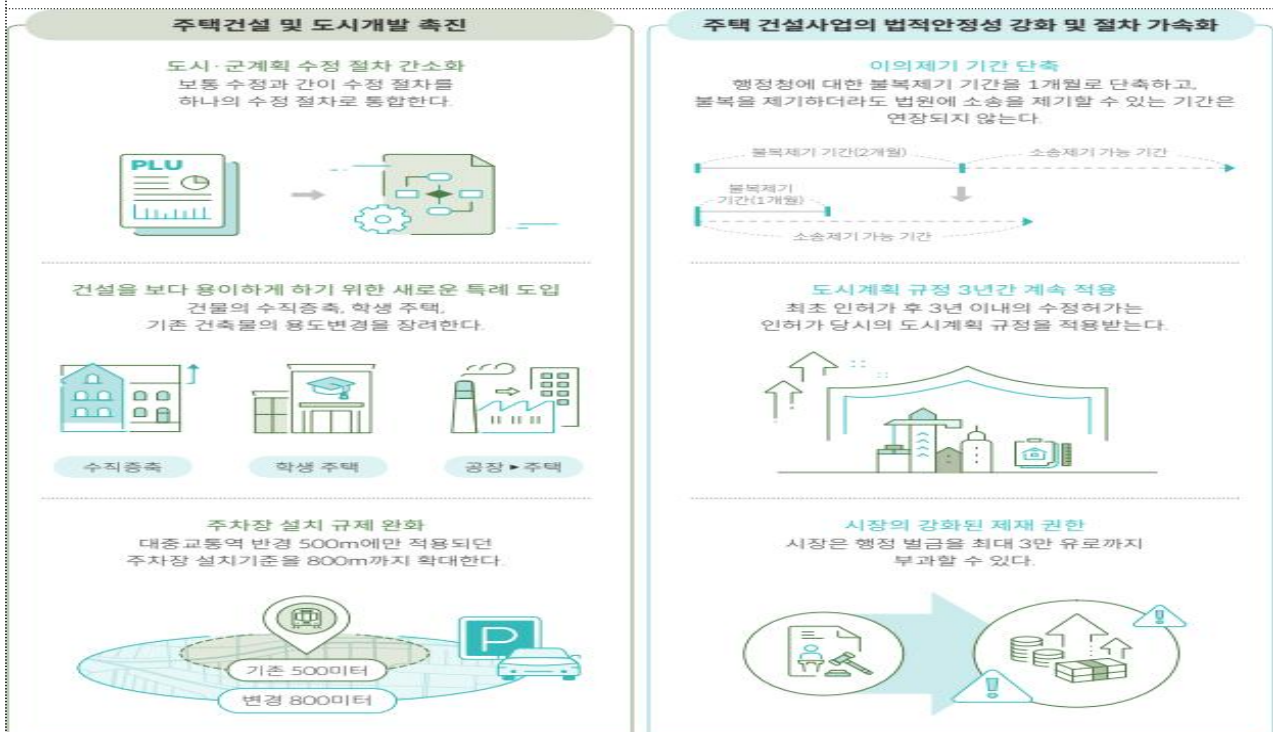
## ② 프랑스의 주택공급 촉진 입법례 (국회 입법조사처, '26.3.17., 강명원)

- ▲ 프랑스, 신규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물량 지속 감소로 인한 주택 부족 문제 해결 위해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 제정·시행 중 ('25.11.~)
- ▲ 도시계획 수립·수정 절차 간소화, 주택용지 확보 위한 기존 지역 용도변경 완화, 행정 인허가 심사 및 불복절차 개선, 주민참여 확대 등 내용 규정
- ▲ 특히,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복수의 비인접 토지에 대한 하나의 인허가 신청 제도를 확대, 정책적 중요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적용토록 명시
- ▲ 최근 우리나라 공사비 및 인건비 상승,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주택 부족 및 공급 우려 상승 → 프랑스의 해당 법 참고사례 활용 가능

## ① 프랑스,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 시행 ('25.11.~)

### 《법 제정·시행 목적 / 주요내용》

- ① 주택공급과 도시개발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다수의 도시계획 규정의 개정·심사 등으로 주택건설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 개선
- ② 도시계획 개정 절차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중 불필요한 평가 절차 간소화
- ③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주택공급 촉진 목표 달성, 주택공급 소요 시간 및 비용 부담 감소, 주민참여 절차 개선



## 2 분야별 주요내용

### [도시계획 관련 분야]

- 현장 공청회 → 전자적 방식에 의한 주민 참여 일반화 (단체장 선택)
- 도시계획 전면 수정의 경우를 줄이고, 부분 수정 절차 적용범위 확대
  - \* 종전의 보통 수정절차 및 간이 수정절차를 하나의 수정절차로 통합, 분쟁 가능성 축소
- 광역도시기본계획 주기적 평가 (평가 주기 연장: 6년 → 10년)
  - \*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실효되도록 하던 제도 폐지 병행
- 광역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관리계획 통합 → 이중구조 비효율성 개선
- 도시·군 계획을 통해 특정 구역에 대한 저밀도 개발 제한, 일정 수준 이상의 밀도로 개발하도록 함 → 집약적 도시공간 형성 유도

### [인허가 및 불복 관련 분야]

- 일부 정책적 중요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복수의 비인접 토지에 대한 일괄 인허가 신청제도 확대 → 정책적 중요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하나의 인허가로 일괄 승인 가능
- 최초 도시계획 인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은 설계 변경 등 이유로 수정 인허가를 받더라도 중간에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처음 인허가 받을 때 적용하던 도시계획 규정 그대로 적용
- 기반 시설 사업의 지정 절차 간소화 및 도지사가 최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 임시적인 개발·정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계획 관련 인허가에 대한 행정 불복 제기 기간 단축(1개월), 인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에 신속 심리 제도 도입
- 인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 진행 중 새로운 거부사유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기간 제한(추가 거부사유: 소송 제기일로부터 2개월 내 제시)

### [용도변경 관련 분야]

- 상업지역, 경제활동지역 또는 단독주택지역 등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할 경우 기존 용도규제 완화 → 주거 (특히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전환
- 도시계획상 밀도와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시장의 예외적 권한 적용 범위 확대
  - \* (기존) 고밀도 지역 → (확대) 고밀도 지역 + 상부 증축사업 및 학생주택 건설
- '도시 전환 사업' 제도 신설: 단독주택 지역과 경제활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재정비와 효율적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도시개발 지원 관련 분야]

- 지역 토지공사 설립과 권한에 관한 내용을 해당 기초단체연합이 의결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함
  - \* 이 때, 해당 기초단체연합에 속한 개별 시(市)는 회원으로 가입됨
- 지자체가 국가 이익을 위한 지역 공공개발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도시개발 업무 범위 확대 → 공공개발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역할 연계 강화
  - \* 전적으로 공공 주체만이 출자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 도시개발사업 또는 개발 관련 활동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에 대해, 지역 토지공사가 토지를 보유·관리할 수 있는 최대 기간 연장(3년→10년), 최초로 부여된 세제상 혜택은 유지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복합 사업 배제 방지

### [이동 근로자 주택 관련 분야]

- 이동 근로자(학생, 실습생, 전근·파견자 등)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여건 개선 관련 제도 신설 → '고용 목적 레지던스'에 관한 제도 신설을 통해 이동 근로자의 주거 지원 (단기 임대차계약 활용)

- 대규모 주택 공사를 위해 건설된 근로자 주거시설을 공사 종료 이후 도시사, 모빌리티형 호텔형 주거시설 운영자, 도의회, 자체 과세권을 가진 광역단체연합 간의 협약을 통해 가족형 사회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분야]

- 자연지역·농업지역·산림지역 불법 설치물 및 건축물 증가에 따른 제재 수단 강화 → 행정 벌금(과태료) 도입 및 이행강제금 상향 조정,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도 관할 지자체가 주도하여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확대
- 관할 지자체가 도시계획 단속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이 경우, 부과·징수금액 국가 귀속)
- 주택 규모에 따라 필수 확보 주차장 면적 의무 규정 완화 → 기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전환 용이하게 함
- 대중교통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만 적용되던 주차장 설치기준(주택 1호당 주차 1대 초과금지)을 800m 이내로 확대, 역세권 등에서 자동차 이외의 이동수단 이용 장려
- 주차장 면적이 1,500m<sup>2</sup>를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태양광 차양 설치 의무 이행 방식 완화
  - \* (기존) 태양광 차양 시설만 설치 → (완화) 수목·녹화형 차양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 방식' 도입

### 3 시사점

- 프랑스 입법례는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인허가 및 불복절차 간소화 등에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 수립 및 수정절차 개선, 용도변경 완화, 토지 확보 및 개발 주체의 역량 강화 등까지 포괄적으로 연계
- 향후 우리나라의 주택공급 체계 개선과 인허가 절차 개편 검토 시 참고 가능

## **V.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V.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1 조례에 금고지정결과 등의 공개 방법으로 구보(區報)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등 [의견26-0055, 광주광역시 광산구 / 회신일자: 2026. 2. 19.]

#### □ 질의요지

가. 조례에 금고지정결과 등의 공개 방법으로 구보(區報)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나. 광산구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배점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상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배점과 달리 하는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거나 금융기관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지?

#### □ 의견 /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각주: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및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여기에서 “법령”에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기능을 하는 행정규칙인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3. 6. 의견제시 25-0074 참조).

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법적성격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집행권을 부여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금고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그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예규 제346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하 “금고지정기준”이라 한다) 3.[1]에서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별표의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금고지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7.[1]에서는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고지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고지정기준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등의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6. 5. 의견제시 18-0106 참조).

####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금고지정기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4.[2]), 금고지정결과(5.[1]),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6.[2]) 및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6.[3])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금고지정기준에서 금고지정결과 등의 공개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금고지정결과 등의 공개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더라도 금고지정기준에 따라 금고지정결과 등을 광산구의 공보인 구보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조례에서 금고지정결과 등의 공개 방법으로

누리집만을 명시하고 구보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금고지정결과 등을 구보를 통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질의 내에 대하여

금고지정기준 별표에서는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세부항목 중 정기예금 예치금리(가목)에 7점을,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나목)에 6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지정기준 3.[1] 두 번째 ○ 나목에서는 항목 6(기타사항)을 정하지 않는 경우 항목 6의 배점(11점)을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에서 항목 2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세부항목 배점의 상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하 “개정규칙안”이라 한다) 별표에서는 항목 6을 정하지 않고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세부항목 중 정기예금 예치금리(가) 및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나) 항목에 각각 8점을 배정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거나 금융기관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개정규칙안에서 정기예금 예치금리와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에 각각 8점을 배정한 것은 금고지정기준 별표상의 배점보다 각각 1점, 2점을 더한 것으로, 금고지정기준 3.[1] 두 번째○ 나목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배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배점이 평가항목 간 균형을 상실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배점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편, 현행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세부항목 중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에 7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에 6점,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에 3점을 배정하고 있는데, 개정규칙안에서는 사실상 유사한 항목인 현행 항목 나.와 항목 마.를 통합하면서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항목에 8점,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항목에 8점으로 배점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금고 후보 금융기관의 보통예금금리 및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에 따라 금고 지정에 있어 유불리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변경이 평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수준의 변경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항목과의 배점 차이, 금고 후보 금융기관들의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산구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 조례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내용 규정 가능 여부** [의견26-0031, 경기도 성남시 / 회신일자: 2026. 2. 11.]

**□ 질의요지**

조례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급하는 사무가 성남시의 자치사무인지에 대해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마목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에게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급하는 사무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로서 성남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서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에서는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호)고 규정하고 있고,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지원하려는 대학등록금의 경우 자녀 대학 입학 등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생활비의 일부를 지출하지 않게 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명목의 금전을 소속 공무원에게 변형된 보수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각주: 법제처 2019. 10. 2. 의견제시 19-0289 참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는 수당의 일종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 국가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규정하고 있는데(각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규정하였으나,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2021. 1. 5.에 해당 수당을 폐지함.) 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원도 이러한 지원과 그 성질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대학등록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수당”의 성격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보입니다(각주: 「지방공무원법」 등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에 대한 자녀 대학등록금은 수당의 일종이라는 입장임.). 또한, 공무원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법령에서 별다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전  
심의 안건의 사전 공고 의무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  
[의견26-0025, 충청남도 당진시 / 회신일자: 2026. 1. 28.]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전에 그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의 내용을 미리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하 “비공개대상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12. 16. 의견제시 25-0319 참조).

먼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서 볼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또는 그에 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내용은 비공개대상 정보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VI.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 VI.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 1 자치경찰단 예산의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여부

[법제처, 25-0788,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2026. 3. 3.]

#### □ 질의요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35조제1항 전단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8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찰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함)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법 제89조제1항에서는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각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임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각주: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단의 협의 결과에 따라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함.)

#### □ 회답

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 이유

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경찰법 제35조 제1항 전단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자치경찰단에도 적용되는지 및 ② (경찰법 제35조제1항 전단이 자치경찰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법 제88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을 근거로 자치경찰단의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법 제35조제1항 전단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자치경찰단에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언상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자치경찰단의 예산이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법 제4조제1항과 제주특별법 제90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법 제8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찰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치경찰단이 수행하는 자치경찰사무가 경찰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 법령의 연혁과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경찰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와 제주특별법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사이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경찰법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89호로 같은 법을 전부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 시행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그 형태는 이른바 일원화모델의 자치경찰제, 즉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경찰사무를 수행하던 기존의 일원적 조직을 유지한 채 조직 내부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고,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각각 받아 시·도경찰청에서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각주: 2020. 8. 4. 의안번호 제2102684호로 발의(김영배의원)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입니다.

한편 제주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여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아 2006년 2월 21일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된 법률로서, 2021년에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되기 전부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자치경찰기구인 자치경찰단을 설치하여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각주: 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된 제주특별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참조), 2021년에 경찰법으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을 폐지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각주: 2020. 8. 4. 의안번호 제2102684호로 발의(김영배의원)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2006년부터 약 15년 동안 시행되고 있던 자치경찰단의 역할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단을 존치하기로 결정되었는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나, 별도의 조직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입법 배경에 따라 2021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경찰청 소속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찰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단(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경찰(지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제주특별법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가 병존하게 되었는데, 각각의 자치경찰사무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양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는 경찰법에만,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등은 제주특별법에만 각각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는바, 양 법령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는 그 사무의 내용과 범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경찰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와 제주특별법 제 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는 입법 배경, 수행 주체, 법적 근거, 세부 내용 등이 다른바, 자치경찰사무라는 명칭이 같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별개의 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자치경찰단에서 수행하는 자치경찰 사무는 제주특별법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일 뿐, 경찰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경찰법 제32조제1항에서 경찰청장은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공무원을 포함함)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찰 공무원’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에는 이를 법 문언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고만 규정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자치경찰단에서 수행하는 자치경찰사무를 포함하도록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같은 규정에 따른 예산 수립 절차가 자치경찰단의 예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법 제88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을 근거로 자치경찰단의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규정들은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89호로 전부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해당 위원회가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와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모두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20. 12. 29. 법률 제17767호로 일부개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로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법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제28조제3항)하면서, 이와 별도로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제35조제1항 전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주특별법의 경우 자치경찰단 사무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외에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87조제1항에서는 자치경찰(각주: 제주특별법 제88조에 따라 두는 경찰을 말함.)과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시·도의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예산안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제주특별법에서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만으로 예산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자치경찰단의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2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광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의 의미

[법제처, 25-0832, 민원인 / 회신일자: 2026. 3. 9.]

### □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5조제3항 전단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등”이라 함)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등이 광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만을 의미하는지?

### □ 회답

학원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등이 광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이유

먼저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0. 1. 23. 회신 19-0541 해석례 참조)이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학원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등이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은 같은 법에서 정의한 “교습비등”과 동일한 의미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는 “교습비등”을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등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교육감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은 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학습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전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학원법 제15조제4항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등은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구분(각주: 2009. 6. 22. 의안번호 제1805229호로 발의(정부)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됨)되는 개념으로 보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에도, 같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학원설립·운영자등은 학원법 제6조제1항 후단, 제14조제1항 후단 또는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교습비등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변경 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중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서 교습비등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에서는 그 처리기간을 5일로 규정하고 있어, 교습비등이 변경되고 변경신고가 완료되기까지 약 20여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원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으로 한정된다면 교습비등을 변경하여 변경등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변경된 교습비등을 광고에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등과는 일치하지 않아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학원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된 교습비등”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교습비등의 변경등록·신고 미이행이나 초과징수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나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에서의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표시 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징수하려는 금액을 광고에 정확히 표시하였는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등이 광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재정위원장 호선 시 일반직 위원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1020, 교육부 / 회신일자: 2026. 3. 9.]

**□ 질의요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 회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일반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는지?

**□ 회답**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 이유**

먼저, “호선(互選)”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각주: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례 참조),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같고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는 것을 의미(각주: 국회회의록용어사전 - 국회용어검색(호선) 참조)합니다.

그런데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언급한 호선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이 사안에서의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특정한 사람들인 “일반직위원”들이 자기네 가운데인 “일반직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로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모두 일반직위원으로 한정되므로, 일반직위원만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의 문언상 타당합니다.

그리고 국립대학회계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재정위원회 당연직위원의 경우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일반직위원의 경우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각각 2명 이상(제1호),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제2호), 그 밖의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제3호) 중에서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일반직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재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내외 인사가 재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여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인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의결권한 역시 일반직위원만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재정위원회 규정 취지 및 국립대학회계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특정한 위원 중에서만 대상을 선출하되 표결에는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경우를 규정할 때, 일부 입법례(각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2항, 「최저임금법」 제15조제2항 등)에서는 “호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특정)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등의 방식으로 위원회 전체가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